

(앞쪽)

시설 · 사업장 출입 · 검사증	
소속: 직급: 성명: 생년월일:	사진 (2cm×3cm)
위 사람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설·사업장 등에 출입·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기 관 장 명 의 직인	

92mm×85mm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출입 · 검사 목적	
출입 · 검사 대상 시설 · 사업장 등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
	년 월 일까지
비고 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